

등록번호	축산진흥과-2479
등록일자	2026. 1. 19.
결재일자	2026. 1. 19.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팀 장	과 장	소 장
장민우	신경은	나정균	이승종
협조			

2026년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김 제 시
축 산 진 흥 과

2026년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을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유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6년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
- 나. 지원근거 : 「축산법」 제3조
- 다. 사업대상 : 김제시 양계농가
- 라. 사업내용 : 가축분뇨 고속퇴비화시설 설치 비용 지원
- 마. 사업규모 : 720,000천원(도비 302,400, 시비 57,600, 자부담 360,000)
- 바. 사 업 량 : 8기[악취저감(탈취)시설 8대]
- 악취저감(탈취)시설 : 양계농가 8기
- 사.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부담 50%
- 아. 기대효과 : 악취저감(탈취)시설 설치로 인한 축산분뇨 처리시 악취 저감

2. 세부 추진계획

-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구 분	우선선정 기준
	농 장
우선순위	(1순위) 도비사업으로 축분고속발효시설을 기 지원받은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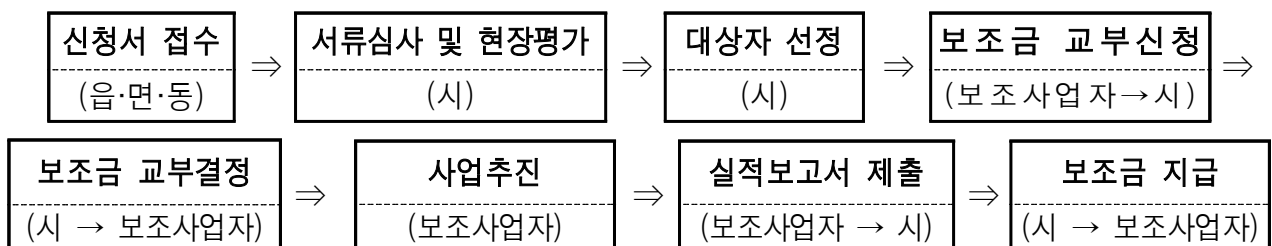
- 나. 지원자격 : 김제시 양계농가(기업규모* 이하) 등
- 기업규모 농장 지원제외(닭 30만수, 오리 7만수 이상)
- 다. 지원한도 : 45백만원/개소 * 지원한도 초과 분은 자부담 처리
- 악취저감(탈취)시설 : 90백만원/개소
- 라. 지원시설 : 가축분뇨 악취저감(탈취)시설
- 고속발효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악취저감(탈취)시설 설치

마. 업체 선정기준

※ 악취저감 탈취시설

- 축분고속발효시설에 지원되는 악취저감 탈취시설은 전문업체를 통한 시설설치
 - * 시설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품목등록(악취제거기, 축산분뇨처리기)되는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된 기업 우선 선정
 - ** 축분고속발효시설 설치 업체는 시설의 운용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 최적화 설치될수 있도록 악취저감 탈취설 설치 업체와 협업을 통해 추진
- 공정예시
 - ICT를 활용하여 악취를 측정(암모니아 등) 및 제어할수 있는 설비 구축
 - 탈취 효과를 위해 배출가스가 2개 이상의 탑을 순환하여 배출되도록 설계
 - 배출가스 → 탈취관① → 탈취관② → 배출구 악취측정 → 배출
- 「악취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의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배출구의 높이를 5m 이상으로 하고 측정공*을 설치하여 환경부의 감시에 따른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권장)
 - * 측정공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배출가스 중 굴뚝배출 시료채취방법에 설명된 위치 선정 준수
 -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 제1항 별표3 기준 준수
-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 * 품질보증과 A/S가 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이 가능한 업체 선정
- 직접 제조·설치·A/S를 할 수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을 필” 한 업체*
 - *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수급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내 공장등록업체 우선 선정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도내 기업 생산·판매제품 우선 구매 협조

바. 신청절차



사. 지원중지 및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사업 수행상의 의무사항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별도 공지

나. 접 수 처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 친환경축산팀

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불가피한 사유로 읍·면·동 방문이 어려울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로 직접 제출 가능

라. 제출서류

구 분	농 장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서식 1)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2)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4. 축산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5. 현장평가 가점 증빙 서류 1부. 6.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부.

4. 기타사항

가. 기타 계약 및 자금 집행 등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함.

나. 대상자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간 사업 미추진 시 사업포기**로 간주 함.

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로 발견되거나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은 회수 조치할 수 있음.

라. 기타 문의 사항은 김제시 축산진흥과(☎063-540-3678)로 문의.

【서식 1】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농장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					
	연락처					
	현황	사육현황			시설현황	
축종		사육두수	축사(㎡)	퇴비사(㎡)		
신청내용	사업명	2026년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사업비 (천원)	합계 (100%)	도비 (42%)	시비 (8%)	자부담 (50%)	기타
	악취저감 (탈취)시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축분고속 발효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김제시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4. 축산업 허가증 1부 5. 현장평가 가점 증빙 서류 1부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

※ 김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집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까지 보유하며 사후관리 기간 등이 종료되었을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법령의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2026년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김제시장 귀하

■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현장 평가표		배점	점수
[농장명 :]			
1. 적정 사육밀도* 준수(축산물이력제, 축산업 허가증 기준) * 「축산법 시행령」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참고 1) 적정 사육밀도보다 10% 이상 저밀도 사육 25점 2) 적정 사육밀도보다 5% 이상 10% 미만 저밀도 사육 20점 3) 적정 사육밀도보다 0% 이상 5% 미만 저밀도 사육 15점 4) 적정 사육밀도 초과 0점		25점	
2. 퇴비사 적정 면적* 여부(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기준)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축종별 퇴비사 용량 참고 1) 적정 면적 이상 확보 25점 2) 적정 면적 미만 확보 15점 3) 타용도 사용 0점		25점	
3. 퇴비부숙도 검사 이행 여부 * 성분검사 주기: 1년에 한 번(신고), 6개월에 한 번(허가), 결과지 3년간 보관 1) 우 수(성분검사 적정 횟수 시행 및 결과지 보관) 20점 2) 보 통(성분검사 적정 횟수 미달 또는 결과지 미보관) 15점 3) 미 흡(성분검사 미실시) 0점		20점	
4.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여부 1) 지 정 15점 2) 미지정 10점		15점	
5.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여부 1) 작 성 15점 2) 미작성 0점		15점	
합 계		100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도비사업으로 축분고속발효시설을 기 지원받은 사업자	-	
가점	☐ 2026년 축산냄새 중점관리 농가 ☐ 용지면 산란계 밀집단지 농가	각 10점	
총 계			
평가자 의견			
평가일시	2026. . .	평가자	(인)

별표 1

<시설기준>

- 축분고속발효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 가능한 탈취시설 설치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제1항 별표3의 1.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기타 지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무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의뢰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함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 탈취 방식에 따른 탈취시설 제반사항 검토
 - 세정탈취시설의 경우「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으로, 사용 완료한 세정수를 폐수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거나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해야 함